

부산광역시사하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5. 27. -----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3. 5. 27.
다. 상정일자 : 2003. 6. 3.(제11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청소과장 박노선)

가. 제안이유

- 환경부지침에 따라 조례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며
-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의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도모와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구청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도록 하여 부적정처리를 예방(안 제6조 1호)
- 감량의무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3호)

-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탁 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 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도록 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안 제12조 제4항 내지 제5항)
-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3조 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조례 개정건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처리계약 및 행정처분 등 주요내용을 자치단체간의 상호통보와 협조, 감량의무사업장의 변경신고의무, 자원화 시설의 관리운영 근거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수거체계 확립과 재활용을 촉진,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대민 감량 인식제고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
-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토록 환경부 조례준칙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